

오정 해모로 스마트시티(조합원 취소분)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2-325-6055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택지유형	분양가상한제
없음	최초 당첨자발표일('26.06.09.)로부터 1년	민간택지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당첨자 서류접수	당첨자 계약체결
일정	2026.05.19.(화)	2026.07.08.(수)	2026.07.13.(월)	2026.07.16.(목)	2026.07.18.(토)~ 2026.07.20.(월)	2026.07.22.(수)

1 공통 유의사항

※ 청약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 아파트는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7.08.(수)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176 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5.19.(화)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122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 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7.13.(월)	2026.07.16.(목)	2026.07.18.(토)~2026.07.20.(월)	2026.07.22.(수)
방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오정 해모로 스마트시티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1-5번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6.06.09.)로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부천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공급위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3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5층, 3개동 총 200세대(조합 68세대, 일반분양 47세대) 중 조합원 취소분 추가모집 일반분양 48세대 중 잔여 10세대

■ 입주시기 : 2027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타입)	잔여 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6910176	01	042.9802A	42A	1	102	1405
	02	042.9802B	42B	5	102	306, 406, 1101, 1306, 1401
	03	071.9700	71	4	103	204, 304, 504, 1504
	합 계			10	-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타입)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5%)		중도금 (60%)			잔금 (35%)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2.5%)	계약 후 1개월 이내(2.5%)	1차(20%)	2차(20%)	3차(20%)	입주 지정일
								2026.08.17	2026.11.16	2027.02.15	
42A	14층	1	104,006,000	286,994,000	391,000,000	9,775,000	9,775,000	78,200,000	78,200,000	78,200,000	136,850,000
42B	3층	1	96,797,400	267,102,600	363,900,000	9,097,500	9,097,500	72,780,000	72,780,000	72,780,000	127,365,000
	4층	1	98,872,200	272,827,800	371,700,000	9,292,500	9,292,500	74,340,000	74,340,000	74,340,000	130,095,000
	11~14층	3	104,006,000	286,994,000	391,000,000	9,775,000	9,775,000	78,200,000	78,200,000	78,200,000	136,850,000
71	2층	1	162,659,000	448,841,000	611,500,000	15,287,500	15,287,500	122,300,000	122,300,000	122,300,000	214,025,000
	3층	1	166,196,800	458,603,200	624,800,000	15,620,000	15,620,000	124,960,000	124,960,000	124,960,000	218,680,000
	5층	1	173,272,400	478,127,600	651,400,000	16,285,000	16,285,000	130,280,000	130,280,000	130,280,000	227,990,000
	15층	1	178,592,400	492,807,600	671,400,000	16,785,000	16,785,000	134,280,000	134,280,000	134,280,000	234,990,000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전용면적 기준)	042.9802A	042.9802B	071.9700
약식표기	42A	42B	71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원,부가세포함)

약식표기 (타입)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42A	5,000,000	500,000	4,500,000	-
42B	6,000,000	600,000	5,400,000	-
71	14,000,000	1,400,000	12,600,000	-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세부 내용 및 유의사항 등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2026.05.19.)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1)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타입)	설치 개소	설치위치	공급금액	비고(제조사명)
42A / 42B	2개소	거실 + 침실1(안방)	무상제공	삼성전자
	3개소	거실 + 침실1(안방) + 침실2	1,300,000	
71	2개소	거실+침실1(안방)	무상제공	삼성전자
	4개소	거실+침실1(안방)+침실2 + 침실3	2,800,000	

2) 가전제품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타입)	설치품목	제조사명	모델번호	공급금액	비고
42A / 42B	비스포크 4도어 키친핏냉장고 + 측면장	삼성	RF60DB9KRA1AP	5,500,000	-
	욕실 스마트복합환풍기	힘펠	-	600,000	-
71	비스포크 4도어 키친핏냉장고 + 김치냉장고 + 측면장	삼성	RF60DB9KRA1AP RQ33DB74E1AP	8,700,000	-
	욕실 스마트복합환풍기	힘펠	-	600,000	-
	식기세척기	삼성	DW80F73X1UEW	1,100,000	-

3) 거실 Style Up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약식표기(타입)	설치품목	공급금액	비고
거실 Style Up I	42A / 42B	거실 스타일업 (우물천장 + 직,간접조명 2면)	800,000	중복 선택 불가 옵션
거실 Style Up II		거실 특화 슬라이딩도어(3연동) + 수납장 + 조명 2개소	3,000,000	
거실 Style Up I	71	거실 스타일업 (직,간접조명 2면)	700,000	-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71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600x1,200)	3,300,000	-

4) 주방 Style Up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약식표기(타입)	설치품목	공급금액	비고
주방 Style Up	42A / 42B	상부장 메탈 PET + 상부장 하부라인조명 +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4,300,000	-
	71		5,500,000	-

■ 추가 선택품목 납부방법

구분	계약금(10%)	잔금(90%)
납부시기	계약 시	입주 시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세부내용 및 유의사항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6.05.19.)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7.16.(목) ~ 2026.07.25.(토)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7.16.(목) 10: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 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구비서류 및 계약 안내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장소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간	문의전화
정당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제출	· 오정 해모로 스마트시티 건본주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1-5번지)	2026.07.18.(토) ~ 2026.07.20.(월) 10:00 ~ 16:00	032-325-6055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6.07.22.(수), 10:00 ~ 16:00	오정 해모로 스마트시티 건본주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1-5번지)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 체결	2026.07.23.(목), 10:00 ~ 16:00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제출 서류(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신분증	청약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모바일 신분증 제외), 여권(※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용도 : 주택공급계약 / 서류제출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제출처 : 오정613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제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공고일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군복무 기간 명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도장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	복무확인서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의 해외 체류기간 판단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추가 해당자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시 단신부임 인정, 단독세대주 또는 동거인(형제·자매, 친구 등)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인정 불가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용도 : 주택공급계약 / 서류제출 위임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제출처 : 오정613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세 피해자 제출서류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임대차 계약서, 낙찰 증명서류[매각허가결정(경매), 매각결정통지서(공매) 등] •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 가능한 여타의 자료 * (예시) 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인 경우 - 해당 지자체로부터 당시의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를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026.07.22.(수) 10:00 ~ 16:00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감도장	본인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시 제출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위임 불가
	○		전자수입인지(중이문서용)	본인	• 해당 세대의 아파트 분양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한 전자수입인지
	○		부동산 실거래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아파트 공급대금과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합계액과 일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대리인 위임 불가 / 온라인발급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당첨유형별 입주 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일체	본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대리인 계약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본인	• [건본주택 비치] 계약자(본인)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온라인발급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만 가능)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 12. 21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예비 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 예비 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2026.07.23.(목), 10:00 ~ 16:00** /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비 고
아파트 분양금액	우리은행	1005-204-553365	오정613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외2)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발코니 확장 공사비	우리은행	1005-004-807596	(주)에이치제이중공업 건설부문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추가 선택품목 공사비	우리은행	1005-004-807596	(주)에이치제이중공업 건설부문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7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제53조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 제53조제9호나목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3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
| | 도시형 생활주택 | | |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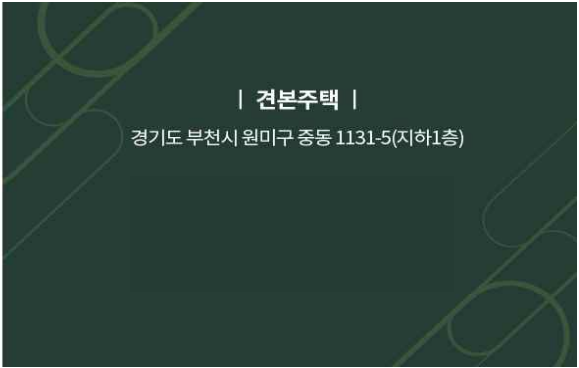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 본 무순위 입주자고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 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명	오정613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주) 에이치제이중공업 건설부문
법인등록번호	121171-0007794	180111-0602507
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212번길 14, 4층(오정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71길 4(갈월동)

※ 기재사항의 오류 및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분양 문의 : 032-325-6055



032) **325-6055**

※ 본 모집공고 및 공급(분양)계약서 상의 기재사항 오류 및 미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